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4877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정무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2205791	김한규의원	2024.11.22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(2025.2.18.)
2206218	권칠승의원	2024.12.5.	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정무 위원회(2025.2.19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
2214326	이양수의원	2025.11.17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(2025.11.24.)

가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(2025.11.25.)에
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
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1차 정무위원회(2025.11.27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시설(보훈병원 포함)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(이하 “위탁병원”이라 함)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, 광주, 대구, 대전, 부산,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,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,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.

이에,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42조 등)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본문 중 “국가의 의료시설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”을 “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”를 “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의료시설에서”를 “의료기관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료시설”을 “의료기관”으로, “의료시설에서”를 “의료기관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훈병원”을 각각 “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보훈병원”을 “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1. 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
2.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

제42조의2 전단 중 “보훈병원에서의”를 “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”로, “보훈병원”을 “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2 전단 중 “보훈병원”을 “보훈병원, 공공단체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제81조 중 “제42조,”를 “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같은 조 제7항, 제42조의2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7호 중 “제42조,”를 “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”로 한다.

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의료시설”을 “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2조(진료) ①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(부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국가의 의료시설</u> 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. 다만,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42조(진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</u>-----. ----- ----- 1. <u>국가의 의료기관</u>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2. <u>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</u> 3.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</u>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
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
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(약제비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에서 같다)은 국가가 부담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④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 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이라 한다)

② -----
 --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
 기관에-----.

③ _____

----- 의료기관
에 서 -----

 -----.

[illegible]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⑥ (생략)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1. ~ 4. (생략)

⑧ (생략)

제42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
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

⑤ -----

-----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-----.

-----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⑧ (현행과 같음)

제42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제73조의2(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·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) 국가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·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(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한 진료를

-----보
-----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
-----서의-----

-----보훈병원과 공공단체
-----의료기관-----

-----.

-----.

제73조의2(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·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) -----

-----보훈병원, 공공단체의료
-----기관-----

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	-----. ----- -----.
제81조(사법경찰권)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<u>제42조</u>,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 행한다.	제81조(사법경찰권) ----- -----<u>제42조</u> <u>에 따른 의료기관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